

# 「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」 검 토 보 고 서

본 조례안은 2019년 8월 16일 지광천 의원이 발의하였고, 2019년 8월 2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임.

## 1. 제안이유

-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등 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군수 및 군민의 책무 (안 제4조 ~ 제5조)
- 다. 교통안전 교육(안 제6조)
  - 군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
  - 어린이·노인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육
- 라. 교통봉사 단체에 교통질서 지도요청 (안 제7조)
  - 어린이 보호구역 등·하곳길, 지역 축제 등
- 마.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(안 제9조)
  - 70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반납 자에게 교통비 등 교통수단 이용 지원

## 3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 교육, 교통봉사 단체에 교통질서 지도요청 및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을 통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,

-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11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 
안 제4조,제5조는 군수 및 군민의 책무  
안 제6조에서는 교통안전 교육과 홍보활동 실시  
안 제7조에서는 교통봉사 단체에 교통질서 지도요청  
안 제9조에서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 
각각 정하였습니다.
- 조례안의 조문 및 형식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.

#### 4. 참고자료 : 관계법령

- 「교통안전법」, 「도로교통법」

## [관련법령]

### ○ 교통안전법

제3조(국가 등의 의무) ①국가는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.

②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 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당해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.

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(이하 "국가등"이라 한다)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·교육·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.

### ○ 도로교통법

제12조(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)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.

1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유치원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
2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
3.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
4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,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「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·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

중 유치원·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

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,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.

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.

## ○ 강원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

제3조(도와 시·군의 책무) ① 강원도지사(이하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도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시책을 수립·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·교육·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③ 도지사는 시·군의 교통안전 시책을 종합 조정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시장·군수는 관할 구역의 특성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진다.

제6조(교통안전교육) 도지사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7조(보조금 지원 등) 도지사는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한 민·관 행사
2.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 문화정착을 위한 민간단체 협력사업
3.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교통사고 예방 지원사업
4.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모범운수종사자 지원사업
5.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지원사업

제8조(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) 「도로교통법」 제93조제1항제

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(失效)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.